

## 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정 1995년 12월 27일

개정 2003년 7월 3일

개정 2010년 6월 7일

개정 2011년 4월 28일

**제 7 조 (설치와 구성)** 의과대학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 중 간사 또는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.
2.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, 교육부학장, 학생부학장, 연구 및 기금부학장, 의학과장, 의예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한다.
3. 선출직 위원은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되 의과대학 주임교수가 아닌 부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 8 조 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과대학의 제반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예결산 심의
2. 학칙 및 제 규정의 수립 및 변경
3.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4. 교무 및 학사, 교육, 학생, 연구 및 기금에 관한 제반 사항
5. 기타 의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 9 조 (회의와 의결)** 회의는 의과대학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